(:)



[시행 2019. 10. 24.] [대통령령 제30153호, 2019. 10. 22., 일부개정]

중소벤처기업부 (정책총괄과) 042-481-4376

- **1** () 이 영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7. 6, 11.〉
- **2** () ①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"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〈개정 2007, 6, 11., 2013, 6, 28., 2016, 7, 28., 2019, 10, 22.〉
- 1. 대표권이 있는 임원(이하 "회사대표"라 한다)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[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(주식회사인 경우에는 「상법」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같다)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]인 「상법」상의 회사(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)
- 2. 여성이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
- 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 - 가.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
 - 나.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
 - 다.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
 - 라.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
- ② 삭제<2016. 7. 28.>
- 2 **2(**) 법 제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"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·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9, 10, 22,]

- 3 (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, 11, 19, 2017, 7, 26, >
- **4** (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7, 6, 11., 2009, 11, 19.>
-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〈개정 2017, 7, 26., 2019, 4, 2.〉
- 1.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
- 2.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
-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
- 4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

- 5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
- 6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
- 7. 그 밖에 경제분야·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6. 11. >

[제목개정 2009. 11. 19.]

- **4 2(**)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 >

[본조신설 2015. 12. 31.]

- **5** (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 〉
- 1.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
- 6.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
- 7.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
- 6 (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(5)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07, 6, 11.〉
-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7. 6. 11.>
- 7 ()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,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있다. 〈개정 2017, 7, 26.〉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- 1.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(이하 "여성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
- 2.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[전문개정 2009. 11. 19.]
- 8 (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 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,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. 11. 19., 2017. 7. 26.〉 [제목개정 2009. 11. 19.]
- 9 ()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설립허가 신청서
- 2. 정관
- 3.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
- 4.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- 5. 재산목록 및 부동산 · 예금 ·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· 금융기관등의 증명서
- 6. 창립총회 회의록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, 26.>
-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.
- 10 ()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업내용
- 5. 회원의 자격
- 6. 임원에 관한 사항
- 7.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
- 11 ()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**12** ()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
- 2. 여성의 창업지원
- 3.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·훈련·연수
- 4.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
- 5.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
- 6.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
- 7.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8.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
- **13 (**)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,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7. 6. 11., 2017. 7. 26.>
-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**14** (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· 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(지원센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관련기관 ·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 ·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, 7, 26.〉
- 15 (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이하 "구매정보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, 7, 26, 2019, 10, 22, >
- 1. 「상법」상의 회사인 경우
 - 가. 주주명부 1부
 - 나. 사워명부 1부
 - 다. 정관 1부
- 2. 개인사업자인 경우: 동업계약서(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- 3. 협동조합의 경우
 - 가. 조합원명부 1부
 - 나. 출자자명부 1부
 - 다. 임워명부 1부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, 7, 26.〉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·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 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6, 7, 28,]

[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<2016. 7. 28. >]

- **16 (**)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.
- 1.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
- 2.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
-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 >

[본조신설 2016. 7. 28.]

- **17** ()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- 1.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·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: 제 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
 - 나.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·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: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
- 2.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

[본조신설 2016. 7. 28.]

- **18 (**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
- 2.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
- 3.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
- 4.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· 징수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
- 2.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,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[본조신설 2016, 7, 28,]
- 19 () 중소벤처기업부장관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- 1.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 · 감독에 관한 사무

- 2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6, 7, 28,]

20 (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
[본조신설 2015. 12. 30.]

[제15조에서 이동 <2016. 7. 28.>]